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6. 1. 6 조례 제2698호 일부개정 2019. 10. 28 조례 제3122호(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안 양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인성교육"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·공동체·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안양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을 실시대상으로 하되,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모든 시민의 인성 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- 제6조(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
- 3.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4.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학교,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- 6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제7조(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)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성교육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2. 시 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공무원
 - 3.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4.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0. 28>
- 제9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인성교육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)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예산 지원)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,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인성교육의 홍보)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0. 28 조례 제3122호,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